

예 산 총 칙

2020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34,875,309	13,046,259
일반회계	419,895,055	12,596,852
특별회계	14,980,254	449,408
기타특별회계	14,980,254	449,40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776,494	53,295
주택사업특별회계	270,895	8,127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	476,806	14,304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6,103,695	183,111
주차장사업특별회계	897,250	26,918
대지보상특별회계	100,000	3,000
청양군전원마을조성사업특별회계	417,523	12,526
석탄회지역발전기금사업특별회계	230,000	6,900
학교급식지원특별회계	4,707,591	141,228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286,407천원으로 한다.
(일반 2,345,066천원, 목적 5,941,341천원)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3,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7 조 기구·직제 개편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과 조례의 제·개정으로 부서간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사업예산 구조화를 통하여 예산을 상호 이체한다.